

의안번호	제668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안지윤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8월 23일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안지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8월 23일

발 의 자 : 안지윤, 최정훈, 김국기,
박재주, 안치영, 오영탁,
조성태

1. 개정이유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일부개정(2023.6.20. 개정, 2023.12.21. 시행)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 위임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(안 제3조의2)
- 신설된 법 제5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)**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
 2.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, 분석 및 보급
 3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, 보존, 활용방안
 4.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 5.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
 6.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

7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

8.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제3항의 “제외할 수 있다”를 “제외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의 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”을 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의 “부서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문화기반 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 및 육성하여야 한다.</u> 〈신 설〉	<u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제3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</u> <u>2.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, 분석 및 보급</u>

3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, 보존, 활용방안
4.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5.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
6. 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
7.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
8.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~ ②
(생략)
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
(생략)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제5조(지원경비의 관리) ① ~ ②
(현행과 같음)
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,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
(현행과 같음)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~4. (생략) 제9조(간사 등) ① (생략) ② 간사는 업무담당 <u>부서장</u>으로 한다.	2.~4. (현행과 같음) 제9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간사는 업무담당 <u>과장</u>으로 한다.
--	---

관련법령 발췌

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(2023. 12. 21. 시행)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,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·육성,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제5조의2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
2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
3. 진흥 시책 및 추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
4.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과 전망
5. 국내외 박물관 및 미술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- 제5조의3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- 제5조의4(실태조사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,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20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